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9. 26. 양순임 의원 외 14명 발의 (의안번호 제194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0. 16.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안 제4조)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하)

○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¹⁾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 관련 교육, 정보제공,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를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한 바,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²⁾에서는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70세 전후로 안전 운전 관련 주요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도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1)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 고령운전자 나이 기준(조례)

구분	65세 이상	70세 이상	미제정
자치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동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동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중구	12개구

-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방법을 규정함.
- 본 조례 제정안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방·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9.26. 이용진 의원 외 13명 발의 (의안번호 제196호)

나. 회부일자: 2023.10.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0. 16. 상정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7.4.)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의 전기자전거 이용 대중화 취지에 맞추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제명)
-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10조~제13조, 안 제15조)
-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활성화계획 중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내용 신설(안 제5조제2항)
-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와 지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위탁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나.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2023. 9. 26. ~ 2023. 10. 1):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하)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³⁾(시행 2023.7.4.)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⁴⁾의 전기자전거 이용 대중화 취지에 맞추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가. 주요 사항 검토

○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및 용어 수정(제명, 안 제2조, 안 제10조 ~ 제13조, 안 제15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제명)

· 자전거정비소 ⇒ 자전거수리센터

○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및 조항 신설(안 제5조)

· 정비계획 ⇒ 활성화계획

(신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통행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 상위법의 전기자전거 이용 대중화 취지에 맞추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함(안 제7조의2)

○ 기존 위탁운영 조항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3.]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음.
- 개정 및 신설된 조항들은 조례로 위임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중 아래 사항은 집행부의 요청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 안	수정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계획”을 각각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현행대로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활성화계획” 을 “정비계획” 으로 수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6
----------	--------

제안 연월일: 2023년 10월 16일

제안자: 도시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현행대로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활성화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호 중 “활성화계획”을
“정비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 전거이용시설의 정 비계획(이하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 전거이용 활성화계 획(이하 “활성화계 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 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② ----- 활 성화계획----- ----- -----.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자전거이용시설 물의 설치와 정비 계획	2. ----- ----- 활성화 계획	2. ----- 정비 계획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10. 5.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181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0. 17.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 제안이유

2004.06.25.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2004.07.3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 10년이 넘게 사업이 장기 정체되었으나, 2021.0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기획안을 수립 · 확정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평균층수	추진 단계	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6	성북 동	179-68	12.8	170%	60%	7층/ 12층이하	2	주택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
변경	6	성북 동	179-68	11.0	175.3 %	60%	13층이하	2	주택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

○ 성북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성북 제1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구 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	증) 109,639.7	109,639.7	-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109,639.7	109,639.7	100.0	-
정비 기 반시설 등	소 계	-	증) 14,650.7	14,650.7	13.4	-
	도 로	-	증) 8,531.4	8,531.4	7.8	-
	공 원	-	증) 6,119.3	6,119.3	5.6	지상부 공공시설(도서관) 및 지하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획 지		-	증) 94,989.0	94,989.0	8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다. 추진현황

- 2004.06.25.: 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
- 2004.07.31.: 성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20.11.02.: 공모신청(사업방식: 단독시행, 공공시행자: LH공사)
- 2021.03.09.: 서울시 도시건축TF 사전검토
- 2021.0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 2021.06.19.: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 2021.07.30.: 공공재개발 지원 약정 체결 (추진위↔LH)
- 2022.01.10.: 사전기획가 사전 자문 착수(※사전기획가: 한양대 노승범교수)
- 2022.03.17.~05.11.: 사전기획 워킹그룹회의(3회) 및 주민참여단설명회(2회)
- 2022.05.25.: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1차
- 2022.07.06.: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2차
- 2023.01.06.: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3차
- 2023.06.30.: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4차
- 2023.07.26.: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23.08.17.: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서 송부(시 → 구)
- 2023.08.22.: 성북1구역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추진위 → 구)
- 2023.09.14.~10.16.: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 2023.09.18.: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주민설명회 개최

라. 법령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하)

가. 주요 사항 검토

○ 본 의견청취안은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⁵⁾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4.6.25.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7.3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된 이후, 2021.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2022.1월부터 2023.6월까지 서울시 사전기획자 회의(19회) 및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4회)를 거쳐 2023.7.26. 사전기획(안) 주민설명회, 2023.8.17. 사전기획서 송부(시→구), 2023.8.22. 정비계획(안) 입안제안(추진위→구), 2023.9.14. 주민공람 공고 및 2023.9.18.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주요내용으로는,

- 사업구역은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총 면적 109,639.7㎡임.
용도지역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24,358.5㎡(22.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5,281.2㎡(77.8%),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기반시설 도로 8,531.4㎡(7.8%), 공원 6,119.3㎡(5.6%), 주거용지 획지 94,989㎡(86.6%)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으로는,
 - 도로) 중로 총 2개소 중 1개소 도로 확폭, 1개소 신설 및 소로 4개소 신설
 - 주차장) 85면, 연면적 2,547㎡, 지하1층 규모 1개소 신설
 - 공 원) 2개소 신설(3,692.0㎡, 2,427.3㎡)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도서관) 연면적 2,250㎡, 지상 3층 규모 1개소 신설
 - 건축시설계획의 건립세대수는 임대주택 408세대 포함 총 2,036세대로, 60㎡이하 1,315세대(64.6%), 74㎡이상 135㎡이하 721세대(35.4%)이며,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82%이하, 기부채납 10.7% 조건으로 층수는 평균 13층 이하로 계획하였음.
- 본 의견청취안은 2004.6.25.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4.7.3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 10년이 넘게 사업이 장기 정체되었으나, 2021.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위 사업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인해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성북1구역 입안 동의요건(토지면적 1/2 이상 및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 동의) 적합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10. 5.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182호)

나. 회부일자: 2023.10.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0. 17.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 (2009.01.02.)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길음동 1289 외 18필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교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청사 신설로 인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 공공공지, (지하)주차장 → 공공청사
 - 택지1-2(종교시설) → 공원

다. 추진현황

- 2002.10.23: 길음뉴타운 개발계획발표
- 2004.11.10: 길음뉴타운 개발기본계획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190호)
- 2006.06.29: 길음뉴타운지구 확장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25호)
- 2006.10.19: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2009.01.02: 길음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8-504호)
- 2010.04.27: 조합설립인가
- 2013.12.03: 사업시행계획인가
- 2019.05.13: 길음2동 주민센터 신축위치 변경계획(성북구 주거정비과-6535호)
- 2022.01.27: 준공인가
- 2022.05.06: 이전고시
- 2023.06.14: 길음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부서 사전협의
- 2023.08.10: 주민공람공고(2023.08.10.~2023.08.24./ 14일 간)

라. 주요 변경 내용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 칭	면적(㎡)			구성비 (%)	비 고	변경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07,477.7	-	107,477.7	100.0		-

구분	명 칭	면적(㎡)			구성비 (%)	비 고	변경률
		기정	증감	변경			
정비 기반 시설	소계	32,273.8	증 176.7	32,450.5	30.2		0.548 %
	도로	8,698.4	-	8,698.4	8.1		-
	공원	11,248.6	증 176.7	11,425.3	10.6		1.571 %
	공공공지	11,230.9	감 1,249.5	9,981.4	9.3	차하주차장- 중복결정	11.126 %
	공공청사	0	증 1,249.5	1,249.5	1.2		100.000 %
	사회복지시설	1,095.9	-	1,095.9	1.0		-
택지	1-1	70,584.2	-	70,584.2	65.7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기타	소계	4,619.7	감 176.7	4,443.0	4.1		3.825 %
	1-2	176.7	감 176.7	176.7	0.2	종교시설	100.000 %
	1-3	895.8	-	895.8	0.8	종교시설	-
	1-4	1,476.8	-	1,476.8	1.4	종교시설	-
	1-5	533.7	-	533.7	0.5	종교시설	-
	1-6	1,536.7	-	1,536.7	1.4	종교시설	-

마. 법령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하)

가. 주요 사항 검토

- 길음1구역은 2002.10.23. 길음뉴타운 개발계획 발표된 이후, 2004.11.10. 길음뉴타운 개발기본계획 공고, 2006.6.29. 길음뉴타운지구 확장 지정고시, 2006.10.19.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09.1.2. 길음(확장)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0.4.27. 조합설립인가, 2013.12.3. 사업시행계획인가, 2016.3.24. 관리처분 계획인가 되었음. 2023.6.14 길음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부서 사전협의와 2023.8월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후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⁶⁾에 따라 변경사안에 대하여 구의

6)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변경 내용

종교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청사 신설로 인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 공공공지, (지하)주차장 → 공공청사
- 택지1-2(종교시설) → 공원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공원면적 : 19,004.1㎡ → 19,180.8㎡(증 176.7㎡)
- 공공공지 : 11,515.4㎡ → 10,265.9㎡(감 1,249.5㎡)
- 공공청사 : 0 → 1,249.5㎡(신설)
- 종교시설 : 7,032.2㎡ → 6,855.5㎡(감 176.7㎡)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 주차장 : 1개소 취소, 공공공지 하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취소
- 공원시설 : 14,677.4㎡ → 14,854.1㎡(증 176.7㎡, 종교용지⇒공원)
- 공공공지 : 기정 11,515.4㎡ → 변경 10,265.9㎡ 감)1,249.5㎡
- 공공청사 : 1,249.5㎡ 신설(길음2동주민센터)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획지 1-2 폐지 후 공원으로 편입

○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검토 후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구의회 의견 및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중 합리적인 문제 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촉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5.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183호)

나. 회부일자: 2023.10.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0. 17.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현행) 2023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축법」 제87조의3⁷⁾, 「지방재정법」 제9조⁸⁾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협의사항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기 타 : 입법예고 대상 (2023.8.17.~9.6)

7)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8)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하)

-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건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